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완화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76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완화 등	3
2. 품목 제조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근거 마련	11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취소 근거 마련	16

I. 개요

1.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7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2. 18.
- (3) 회 부 일 : 2025.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리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고, 조리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조리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사항이 남아 있으면 신규 집단급식소의 신고가 어려워 현장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6개월이상 휴업하거나 시설을 멸실한 경우 신고관청에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조행위를 한 경우 처분근거를 신설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에 제조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을 훼손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제75조, 제80조 및 제88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완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단, B형간염환자는 제외함)를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리사가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당연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를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환자로 한정하고, 조리사가 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면허를 당연취소하는 대신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제54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u>감염병 환자</u>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u>업무정지</u>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 ----- ----- ----- ----- ----- ----- <u>업무정지(다만, 제1호의2의 경우는 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한다)</u> ----- -----.
1. <u>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게 된 경우 <u><신 설></u>	1. <u>제5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u> ----- <u>1의2. 제54조제2호에</u> <u>해당하게</u> <u>된 경우</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1년

* 조리사 결격사유에 대한 특례: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 전 제54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조리사에 대해서도 제80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3조¹⁾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1)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4조²⁾에서는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로 i)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³⁾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함), i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⁴⁾에 따른 감염병환자(다만, B형간염환자는 제외함), iii)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iv)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조리사 면허 취득 절차〉

자격증 취득	조리사 면허	면허취득용 건강검진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취득	▶ 신청서에 조리사자격증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내과에서 흉부방사선촬영,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검사, 약물검사를 실시 ▶ 보건소 비용 : 31,170원
산입인력관리공단	시·군·구청	의원 및 보건소

2) 「식품위생법」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12. (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참고 1] 법정전염병 분류 및 종류 p. 21

□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⁵⁾에서는 감염병환자등⁶⁾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⁷⁾에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무 종사 제한 업종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조리사의 결격사유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를,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 환자로 한정하고, 감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염병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리사 면허가 당연히 취소되도록 한 규정을 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중보건상 위해가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⁸⁾에 한정하여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의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식품위생법」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로 ‘B형간염을 제외한 모든 감염병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조리사가 인플루엔자와 같이 일시적·치료 가능한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무관하게 면허를 당연 취소하도록 하고, 나아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취득도 제한하고 있어, 감염병 관리의 목적과 위험도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범위와 수준이 과도하며 법체계 간 정합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조리사 외에 공중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職業群)인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위생사 등의 경우 감염병환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임.⁹⁾

□ 따라서, 조리사에 대한 감염병 관련 규제를 감염병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격 박탈이 아닌 업무 제한 중

8) “수인성 전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이 오염된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질병으로 사람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섭취하여 발병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들은 오염된 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 위장관에서 증식하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분변을 통해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 이는 다시 주변의 물을 오염시켜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이러한 전파경로를 분변-경구 전파경로라 하는데 수인성 전염병이 대표적인 분변-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수인성 전염병은 동일한 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어 공중보건학 측면에서 중요한 질환이다.

9) [참고 2] 보건의료 직종 결격사유 p.22

심으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국민영양관리법」¹⁰⁾에 따른 영양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 환자는 제외)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¹¹⁾에서도 문신사 결격사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 당시부터 조리사 또는 영양사 결격사유로 전염병환자(천연두 등 약 20종)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2009년 2월 개정을 통하여 전염병환자(천연두 등 약 30종) 중 A형간염환자와는 달리 일상적인 식사·접촉만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B형간염¹²⁾환자는 제외하였음.

10)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11) 「문신사법」

제5조(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른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6. ~ 7. (생략)

12) A형 간염은 오염된 물·음식, 환자의 분변 등에 의해 경구(대변-경구)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이나, B형 간염은 혈액·체액 매개로 전염되며 일상적인 식사·접촉만으로는 잘 전염되지 않음.

〈조리사 결격사유 개정 이력〉

제정(1962)	개정(2009.2.6)	개정(2009.12.29)	개정(2010.3.26)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환자 또는 심신모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 기타 유독성물질에 중독된 자 4. 소행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 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 를 받을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당시 「전염병예방법」에 전염병은 천연두, 콜레라, 라병 등 약 20종	※ 당시 「전염병예방법」에 전염병은 천연두, 콜레라, 라병 등 약 36종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전부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영양관리법」 제정(2010.3.26.)으로 영양사 결격사유가 「식품위생법」에서 삭제됨.

□ 다만, 안 부칙 제2조는 조리사 결격사유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이 법률 시행 당시 개정 전 제54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조리사에 대해서도 제80조제1항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당시 개정 전 제54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염병환자에 해당하여 조리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없음.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리사 면허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의 범위가 모호하고, 조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간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 개정안은 처분의 대상을 수인성 감염병환자에 한정하고,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 면허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완화한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취지에 상응으로 판단됨.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현행 조리사 감염병 관련 제도는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감염병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발급 제한이나 취소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리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음.
- 개정안을 통해 조리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조리사의 권익 보호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영업자가 현행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17호).

– 11 –

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6. (생략)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 제3항, <u>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u>(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 20.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 ----- <u>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u>----- ----- ----- ----- 18. ~ 2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6조제1항¹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13) 「식품위생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18. 3. 13.>
- 3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8. 3. 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자가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8호¹⁴⁾에 따라 형사상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가능한 실정임.

- 참고로, 법률 제9164호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은 허가취소 등의 처분사유로 제6호에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품목 제조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위임근거를 두고 있었음.¹⁵⁾

14)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15) 「식품위생법」(법률 제9432호)

제58조(허가의 취소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第22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 ③(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3. 품목 및 품목류제조정지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때	법 제58조	영업정지 2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7일	

- 그런데, 2009년 2월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으로 제6호(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가 위반행위의 유형·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어느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법문만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되면서, 품목 제조정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근거가 법문상 누락된 것으로 보임.

□ 이에 개정안은 제75조제1항에 ‘제7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품목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¹⁶⁾.

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7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에 따라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8.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정지 기간 중에 제품을 제조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서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신설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취소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집단급식소) ① ~ ⑥ (생략) <u><신설></u>	제88조(집단급식소)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의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수리의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7조제7항에 따른 절차 등을 준용한다.</u> <u>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u> <u>2.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u>
<u>⑦ (생략)</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허가(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⁷⁾
- 반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급식소 신고수리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집단급식소가 지도·점검 대상에 계속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¹⁸⁾

17)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8) [참고 3] 집단급식소 현황 p.25

- 이에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급식소의 신고 수리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신고 수리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37조제7항¹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7조제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행정처분의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조항임.
- 또한, 개정안에서 신고 수리 취소 사유 중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관하여 그 행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신고 수리 취소와 관련된 주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신고 수리 취소 관련 입법례〉

「의료기기법」

제43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

19)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효능이 없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직권 취소) 등록·신고관청은 정기간행물등록·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또는 신고 후 6개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계간·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제1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다.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 운영이 중단된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를 방지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새로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가 가능해질 수 있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	----------------------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8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¹⁾ 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폴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유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가. 파상풍 나. B형간염 다. 일본뇌염 라. C형간염 마. 말라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사. 비브리오패혈증 아. 발진티푸스 자. 발진열 차. 쓰쯔가무시증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공수병 하. 신증후군출혈열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다. 황열 러. 뎅기열 마. 큐열 바. 웨스트나일열 사. 라임병 어. 진드기매개뇌염 저. 유비저 차. 치쿤구냐열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퍼. 매독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4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가. 앵크스	가. 인플루엔자 나. 회충증 다. 관충증 라. 요충증 마. 간흡충증 바. 폐흡충증 사. 장흡충증 아. 수족구병 자. 임질 차. 클라미디아 감염증 카. 연성하감 타. 성기단순포진 파. 천궁균딜로 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가. 메타네타생균(NTS) 감염증 거.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균(MRAB) 감염증 더. 장관감염증 ²⁾ 러. 급성호흡기감염증 ³⁾ 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⁴⁾ 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5호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⁷⁾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⁵⁾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보고 ⁶⁾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1)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2)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P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에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3)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 폐렴균 감염증
- 4)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사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 5)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관할 보건소로 신고
- 6) 보고 : 보건소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질병관리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시장·군수·구청장)
- 7) 전수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 8) 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참고 2】	보건의료 직종 결격사유
---------------	---------------------

직종	근거법령	결격사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법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약사, 한약사	약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

직종	근거법령	결격사유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

직종	근거법령	결격사유
		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에 따른 <u>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u>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 3】	집단급식소 현황
---------------	-----------------

분류*	집단급식소 수(개소)	비 고
기숙사	179	
학교	12,082	
병원	4,058	
사회복지시설	3,604	
산업체	9,829	
공공기관	1,876	
어린이집	13,260	
산후조리원	17	
수련원	202	
기타(미지정 등)	730	
합계	45,837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26.1.12. 검색)

** 분류 : 상기 시스템 상 지자체에서 “업태”에 입력한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시 운영 업체는 신고사항은 아님)